

# 금융 사기의 징후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성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금전적으로 착취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필요나 재정 상태를 고려해볼 때 방지되었거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
- ◆ 다른 가족원이나 지원으로부터 고립된 상태.
- ◆ 큰 액수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권장하는 낯선 사람을 동반한 경우.
- ◆ 거래를 하도록 강요하는 듯 보이는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을 동반한 경우.
- ◆ 본인의 생각을 말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
- ◆ 이들의 재정 상태에 관심이 있는 듯 보이는 지인과 있는 경우.
- ◆ 불안해 하거나 함께 동반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태.
- ◆ 자신의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운 설명을 하는 경우.
- ◆ 이들 계좌의 “없어진 금액”에 대해 걱정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 ◆ 금융 거래 또는 서류에 서명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 ◆ 간병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쫓겨나가거나 보호 시설로 보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

- ◆ 이례적인 은행 거래량.
- ◆ 한 지점/은행에서 다른 지점/은행으로 잦은 계좌 변경.
- ◆ 인출 양식의 변경 또는 이례적인 큰 액수의 인출.
- ◆ 최근에 개설한 공동 계좌에서 큰 액수의 인출 또는 이체.
- ◆ 고객의 일상적인 행동과 다른 은행 거래.
- ◆ 이전의 비활성 계좌 또는 저축예금에서 큰 액수의 인출.
- ◆ ATM을 통해 이루어진 잦은 인출, 특히 노인이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이전에 ATM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수표로 지불되는 주기적인 임대료 또는 공과금이 갑자기 중단된 경우.
- ◆ 안정적인 단일 수익자 신탁이 취소된 경우.
- ◆ 분배 조항이 제삼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 ◆ 수표나 신용카드 신청서와 같은 기타 서류에 의심스러운 서명이 있는 경우.
- ◆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 서명은 정확한 듯 보이지만 금액은 다른 필체로 쓰인 경우.
- ◆ 다른 펜이나 잉크의 사용은 뭔가 잘못된 것을 나타낼 수 있음.
- ◆ 노인이 거래에 대해 알지 못했을 때 발생한 빛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 ◆ 은행 대출 또는 두 번째 모기지를 얻는 경우.
- ◆ 큰 액수의 신용카드 또는 예비 신용 부채.
- ◆ 수탁자 또는 다른 사람이 노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하고 노인에게 어떤 분명한 혜택도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 ◆ 은행 명세서 및 부도 수표가 더 이상 고객의 집으로 발송되지 않는 경우(고객의 의도인지 확인합니다.)
- ◆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성인 또는 동반자가 은행 거래에 대한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뉴욕주  
아동 및  
가족복지국

Capital View Office Park  
52 Washington Street  
Rensselaer, New York 12144

웹사이트:

[ocfs.ny.gov](http://ocfs.ny.gov)

아동 학대 및 부당 대우 신고:

**800.342.3720**

유기 영아 보호법에

대한 문의:

**866.505.SAFE (7233)**

아동 및 성인의 안전, 위탁 보호 및 입양에 관한 문의:

**800.345.KIDS (5437)**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문의:

**866.871.3000**

**866.871.6000 TDD**

카운티 성인 서비스 사무실 전화번호:

**800.342.3009**

(옵션 6번을 누름)

*"우리 아이, 가족, 지역 사회의 안전, 생명, 행복을 지키도록..."*

뉴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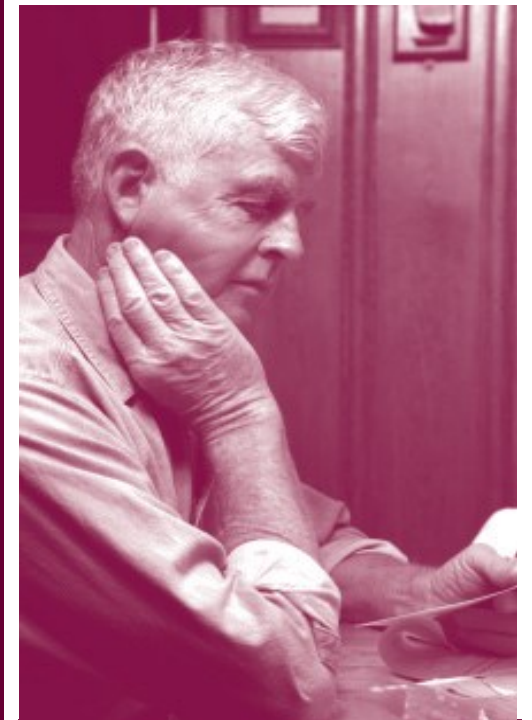
뉴욕주 아동 및 가족복지국은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거하여 요청이 있으면 본 자료를 대형 인쇄물 또는 오디오 테이프로 제공합니다.

발행. 4664 (Rep. 07/2012)



뉴욕주  
아동 및  
가족복지국

# 노인 및 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한 금융 사기



**PSA**  
Protective Services for Adults

## 소개



노인과 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한 금융 사기가 계속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 사기는 사회복지사업법 473.6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습니다: **노인의 자금, 재산 또는 자원에 대한 다른 개인에 의해 사기, 위장, 횡령, 음모, 위조, 기록 변조, 재산 이전 강요 또는 자산에 대한 접근 거부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 대부분의 경우 착취자는 가족이나 지인입니다. 또한 노인은 의료 공급자나 변호사 또는 주식 중개인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신탁자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기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성인을 더욱 착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자행됩니다.

##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인보호서비스(PSA)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국이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성인의 의심스러운 착취에 대한 의뢰를 조사합니다. 뉴욕주에서 서비스를 받은 PSA 고객의 60%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PSA는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합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의뢰는 경찰에게 넘어갑니다. 장애가 없는 성인에 대해 의뢰를 받은 경우 PSA는 그 사람을 적절한 지역 사회 서비스 또는 노인복지국과 같은 다른 기관에 연결하여 돕습니다.

노인 및 취약한 성인 보호에 대한 정보 또는 의심스러운 금융 사기에 관해 의뢰를 하려면 카운티 사회복지부의 성인보호서비스에 연락하시거나 뉴욕주의 인적자원관리부(HRA) 의뢰 중앙접수부 212.630.1853으로 연락하십시오.

## 의심 사례 의뢰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성인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은 지역 사회복지부의 PSA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473-b는 보호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고 믿는 성인을 선의의 의도로 의뢰한 사람에게는 민사책임의 면제를 부여합니다.

PSA는 가능한 빨리 조사를 시작하고 3 업무일 이내에 의뢰된 성인을 방문합니다. 성인의 장애, 학대 위험, 도움을 받으려는 의지 및 개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다른 사람의 능력에 관하여 평가가 실시됩니다. 각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 개입이 이용 가능합니다.

## 은행 직원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행 직원은 노인과 장애가 있는 성인의 금전적 학대를 조기에 알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고객과 자주 접촉하는 은행 직원은 고객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믿는 상황의 전개를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은 금전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은행 거래를 인식해야 합니다. 은행은 직원에게 노인/장애가 있는 성인의 금융 사기를 확인하고 은행의 지정된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수립하여 고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PSA나 응급 상황의 경우, 경찰에게 의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 결정합니다.

PSA는 평가를 실시하고 서비스를 위해 의뢰된 사람과 관련된 은행 기록에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객에게 양도 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불가능할 경우 PSA는 사회복지사업법 144-a에 따라 은행 기록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44-a는 사회복지부 담당자에게 은행/금융기관에 특정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PSA는 이 정보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가 발생되었는지를 결정하고 확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